

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한 5 가지 규칙

1) 차도의 좌측통행이 원칙

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경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곳은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. 도로의 좌측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.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차도 쪽 부분을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

2)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일시정지를 지키고, 안전확인

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후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합니다. 일시정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합니다.

3) 야간 조명 점등

야간에는 조명을 켜야 합니다. 자전거를 타기 전에 조명이 켜지는지 점검합니다.

4) 음주운전 금지

술을 마신 후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.

5) 헬멧 착용

자전거를 탈 때는 승차용 헬멧을 착용하고, 유아·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은 유아를 유아용 좌석에 태울 때나, 유아·아동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유아·아동에게 승용차 헬멧을 씌웁시다.